

2015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정책토론회

디지털 미디어 특성을 반영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공개

침해배제청구권 규정, 댓글 및 폼글 등에 대한 조정,
유사뉴스서비스 개념 도입 등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는 10월 13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언론피해구제제도(부제 : 언론중재법 개정안 쟁점과 해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위원회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인터넷상의 다양한 언론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인터넷상의 잘못된 기사를 삭제·수정·보완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고, 잘못된 기사의 댓글 및 폼글로 인한 피해 구제책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토론회는 김수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기조발표에 이어 강현석 언론중재위원회 조사팀장과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교육콘텐츠팀장의 '인터넷 상의 새로운 언론피해 양상', '언론중재법 개정안 해설'에 대한 주제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신성범 의원



문재완 회장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과 문재완 한국언론법학회 회장이 축사를 전했다.



박용상 위원장



김수일 부장판사

축사에 이어 박용상 언론중재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디지털 미디어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언론피해구제제도를 마련하기 위

해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법률 개정안을 공개하게 됐다”며, 개정법안에 대한 기탄없는 의견 개진과 열띤 토론을 당부했다.

기조발표에서 김수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언론피해영역은 인터넷 네트워크를 따라 확장되고 있으나, 구제방안은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언론중

재위원회의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공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진일보한 언론피해 구제제도의 개선을 가져올 것이라 전망했다.

|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에 맞게 언론중재법 개정 필요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강현석 조사팀장은 언론 조정·중재 현장에서 경험한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와 이로 인해 부각된 현행 언론중재법의 한계점을 실제 조정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강 팀장은 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언론사의 원 기사가 삭제되더라도 블로그, 커뮤니티 등으로 확산된 폼글과 기사에 달린 악성 댓글로 인한 2차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완전한 구제가 어렵다며, 언론중재법은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양재규 교육콘텐츠팀장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제안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양 팀장은 개정법안의 핵심 내용을 ‘인격권에 기한 침해배제청구권 규정’, ‘기사 댓글과 폼글에 대한 조정 중재절차 도입’, ‘신생 뉴스미디어까지 언론피해구제 범위 확장’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설명했다.

먼저, 신설된 침해배제청구권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상에서 언론보도로 인해 자신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받고 있는 사람이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침해 중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했다. 또한 침해배제청구권의 요건으로는 허위이며 피해자의 인격권 등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피해자의 인격권 그 밖의 권리를 계속적으로 중대하게 침해하여 이를 방지하면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웹사이트 게시중단, 기사 수정 및 보완, DB 기사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양 팀장은 기사에 달린 댓글과 블로그 등을 통해 확산된 펴글에 대한 피해구제절차를 마련한 데 대해서, 인터넷 환경 하에서 기사로 인한 피해가 반드시 언론보도로 인한 피

해로 국한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일괄적인 피해구제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사 댓글의 경우에는 게시자가 아닌 웹관리자를 상대로, 펴글은 위법성이 확인된 복제기사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표현의 자유와 게시자의 권리보호 등을 고려해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유사뉴스서비스' 개념을 도입해 현행법에 정함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뉴스서비스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구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고려했다고 밝혔다.

| 새로운 피해구제책 마련에 공감, 각계 의견 수렴해 다듬어야

이어진 토론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포털사, 학계, 법조계, 언론계에서 참가한 토론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김은태 네이버 법무실 부장은 인터넷상에서의 언론피해구제에 대한 원칙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게시글 및 댓글에 대

한 판단이 어려운 웹사이트 관리자가 피신청인의 지위를 갖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영철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는 디지털 뉴스생태계의 역동적인 변화까지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매우 타당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며, 다만 침해배제청구권의 요건 중 권리 침해의 '계속성'과 '중대성'의 판단과정에서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판단을 위해 그 기준과 의미를 분명하게 서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병선 카카오 CR팀 이사는 현행법상으로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에, 기사 댓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각각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댓글 등

을 기사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댓글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는 없는지, 각 기관별 기능과 역할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욱 법무법인 도움 대표변호사는 언론중재법 개정은 무엇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를 신속·간이하게,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위법한 댓글 등에 대해 포털사를 상대로 조정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포털사, 정보통신사업자 등의 부담도 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조형래 조선일보 디지털뉴스본부 취재팀장은 뉴스 배포와 언론 생태계에 포털이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므로, 펴글, 댓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포털이 보다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촉구했다.

사회를 맡은 이상원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새로운 언론피해구제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는 것 같으며,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듬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은태
네이버
법무실
부장

윤영철
연세대 언론홍보
영상학부 교수

이상원
사회자/중재위원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이병선
카카오 CR팀
이사

조현욱
법무법인 도움
대표변호사

조형래
조선일보 디지털
뉴스본부 취재팀장